

2021 대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
(구.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)
모집(3차) 요강

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

(구.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)
운영 문화시설 모집(3차) 요강

《 공모개요 》

- 공 모 명: 『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』 운영 문화시설 공모(3차)
- 사업기간: 2021년 4월~12월
- 신청자격: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가능한 문화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
- 사업내용: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지원
- 신청기간: 2021.4.19.(월)~4.26.(월) 18시 00분 00초 이전까지
- 신청방법: e-mail 접수(sodwywd@dcaf.or.kr) ※ 접수 마감일자 및 시간 엄수
- 제출서류

1.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1부
2. 단체증빙서류(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 등) 1부
3. 관련 실적 증빙자료(해당사업 관련 실적확인서 등)
4.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(사업 담당자) 1부
※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양식에 준하여 반드시 직인 날인
(직인 및 참여자의 서명이 없거나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, 미 접수 처리)

- 심의방법: 서류 및 인터뷰 심의
- 심의일정: (서류·인터뷰) 2021.4.29.(목) / 대전예술가의집 / 예정
※ 인터뷰 심의는 서류 접수 및 서류심의 선정 단체 순으로 시간이 정해지며, 인터뷰 심의 시간은 변경할 수 없음
※ 인터뷰 심의 대상 시설(기관) 관계자 최대 2인 입실 가능
- 결과발표: 2021.4.30.(금) /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
- 문의사항: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사업담당자(042-480-1052,3)

I.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
- 사업기간: 2021. 3월 ~ 12월
- 사업내용: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원
- 주최주관: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문화예술교육팀)
- 후원: 문화체육관광부, 대전광역시
- 협력: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□ 사업목적

- 신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현장 실무 경험 기회 제공
-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□ 사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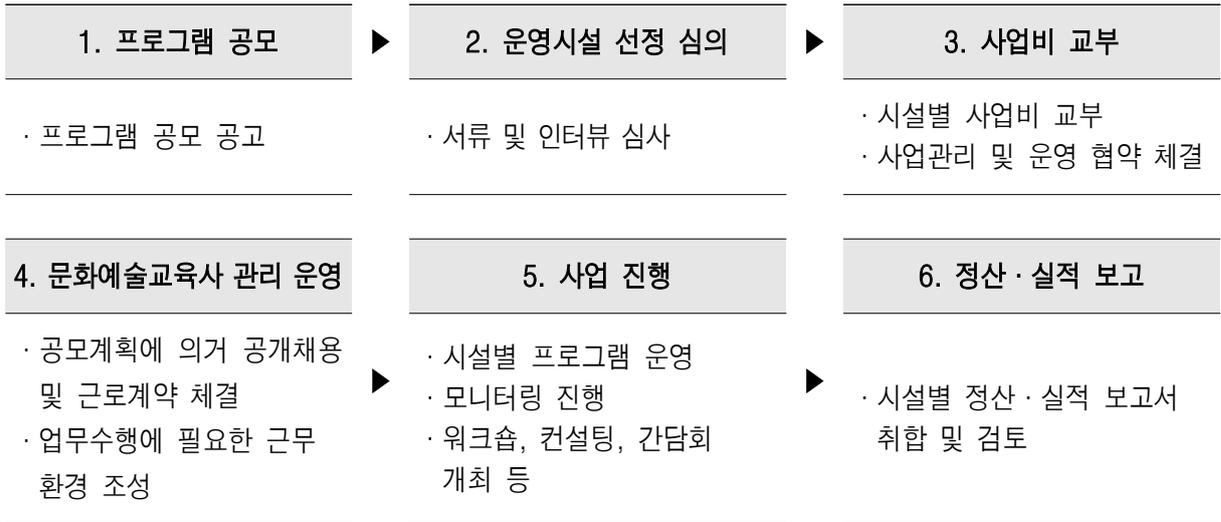
-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을 사업수행기관으로 50% 이상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사업 관리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업 가치 제고
-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내·외 관계자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

□ 추진체계 및 절차

- 추진체계

구분	내용
대전문화재단 (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총괄 관리○ 문화기관(시설) 공모 및 선정○ 자체 기획사업 운영 등
문화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문화예술교육사 선발○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○ 교육사 대상 공통연수, 워크숍 등 참여 지원○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연수(워크숍 등) 필수 참여○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
문화예술교육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문화시설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○ 교육사 대상 공통연수, 워크숍 등 참여○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연수(워크숍 등) 필수 참여○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

○ 추진절차



II. 공모내용

□ 2021년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

□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

(문화시설: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배치 관련)

○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참여 활동 횟수 최대 2회 활동 가능

-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

※ 예) 19~20년 참여 문화예술교육사는 21년부터 채용 불가하며

19년 참여 문화예술교육사는 21년 참여 가능

□ 공모개요

○ 공모일정

구 분	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	비고
공모공고	2021.4.9.(금)	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
신청접수	2021.4.19.(월)~4.26.(월) 마감일 18:00까지	e-mail 접수
서류 및 인터뷰 심의	2021.4.29.(목)	대전문화재단 소통의 방 2
최종 결과발표	2021.4.30.(금)	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

※ 코로나19로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(042-480-1052,3)로 전화주세요.

○ 공모내용: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·개발 및 운영 기관 선정

○ 신청자격: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가능한 문화시설* 및 이에 준하는 시설

※ 의무배치시설: 국공립 공연장·박물관·미술관, 공공도서관, 문화의집, 문화원 등

※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*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시설(기관) 우선 선정

- * 제20조(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)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·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 -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·공립 공연장
 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·공립 미술관
 -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
 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

- * [문화시설의 정의]
 -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(공연시설,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, 도서시설 등)
 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, 제6호,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(지방문화원, 국악원, 전수회관, 종합시설 등)
 -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
 -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,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(생활문화센터, 지역영상미디어센터, 지역서점)

○ 지원배제 및 신청 제외대상

- 국립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(단, 위탁 기관은 신청 가능)
 - ※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의 경우 별도의 보조금(사업비)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
- 전수회관(문화재청 지원 중)
-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- 일반 성인 및 학생(청소년 등)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
- 개인(사립)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일회적 성격의 행사운영 중심 단체
-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기관 및 단체
- 대전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 제출기한 초과단체 및 자료 불성실 제출 단체, 각종 국·시비 지원금 정산 미납단체
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)

○ 지원내용 :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,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

○ 지원규모 : 1개소 / 최대 37,000,000원 지원

(단위: 원)

구분	금액	내용	비고
계	37,000,000	-	-
문화예술교육사 운영비	24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사인건비(기본급+월정액 수당+기관 부담금+여비 등 각종 수당)*10개월 이내 ■ 교육사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	최대 지원 금액
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	13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강사비, 홍보비, 회계검사 수수료, 재료비 등 	"

※ 1개소 최대 지원금 37,000,000원 내에서 각 시설 및 기관 운영 내규(규정)에 따라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 비율 자율적 활용 가능. 단,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지원금 13,0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지원 세부내용

○ 주요내용

항목	내용		
1) 문화예술 교육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- 채용기간: 2021. 4월 ~ 12월 / 배치기간 탄력적 운영 가능(6개월 ~ 8개월) - 채용대상: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한지 3년 이하의 자(우대) - 채용제외대상: 기존 근무 중인 내부인력, 시설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반드시 신규채용 원칙 ※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(구.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)으로 2회 이상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사는 선발 제한 - 채용방법: 선정 문화시설 자체 공개채용 / 서류 및 면접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시설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계획 자체 수립 후 공개 채용에 의거 모집 및 선발 ※ 단, 채용과정에서 절차, 방법, 자격대상에 대한 검증 등 재단과 협의 필수 · 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콘텐츠와 장르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담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※ 최종 선발 이후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,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채용을 포기 하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 차순위자 결정 - 지원규모: 문화예술교육사 운영비 최대 24,000,000원 ※ 시설(기관) 당 1명 채용 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padding: 5px;">교육사인건비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■ 기본급+월정액 수당+기관부담금+여비 등 각종 수당*10개월 이내</td> </tr> </table>	교육사인건비	■ 기본급+월정액 수당+기관부담금+여비 등 각종 수당*10개월 이내
	교육사인건비	■ 기본급+월정액 수당+기관부담금+여비 등 각종 수당*10개월 이내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padding: 5px;">사업수행 관리(운영)비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사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- 임차비(사무용 가구 및 기자재, 컴퓨터 등), 사무용품비, 기타진행비 등 </td> </tr> </table>	사업수행 관리(운영)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사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- 임차비(사무용 가구 및 기자재, 컴퓨터 등), 사무용품비, 기타진행비 등 	
사업수행 관리(운영)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사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- 임차비(사무용 가구 및 기자재, 컴퓨터 등), 사무용품비, 기타진행비 등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급은 2021년도 대전시 생활임금(시급 10,202원, 월 2,133,00원) 기준 이상으로 책정하고, 초과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은 시설 내규(규정)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임금 편성 가능 · 4대 보험, 시간 외 수당, 출장비(여비), 명절 수당 등 각종 수당 책정 가능 · 4대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 가입 필수 ·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가능 ·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- 필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영시설(문화시설)은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■ 문화시설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및 채용 -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- 교육사 대상 공통연수, 워크숍 등 참여 지원 - 교육진흥원 주관 연수 및 워크숍 필수 참여 -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■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- 교육사 대상 공통연수, 워크숍 등 참여 - 교육진흥원 주관 연수 및 워크숍 필수 참여 -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			

항목	내용		
2)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규모: 13,000,000원 이내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td> <td>■ 강사비, 홍보비, 회계검사수수료(필수), 재료비 등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프로그램 운영 장소: 문화시설 내 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장소(교육 공간 내·외부) 사진 첨부 ■ 프로그램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사가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* 기획 ※ 반드시 시설 특성을 살린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함 -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15주차 내외의 체험·강의·감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[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항 : "문화예술교육"이라 함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■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 :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 </div>	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■ 강사비, 홍보비, 회계검사수수료(필수), 재료비 등
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■ 강사비, 홍보비, 회계검사수수료(필수), 재료비 등		

○ 비대면 운영 지침

구분	내용											
대면교육 불할경우 비대면 교육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형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정방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시간 쌍방향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※ 보조강사(필수) 등 최대 2인 파견 ※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, 센터와 사전 협의(파견 여부 등) 후 진행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1시간 당 1시수 인정 (대면교육과 동일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온라인 콘텐츠 제작·활용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를 제작(동영상, 키트 등)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포, 활용하는 교육활동 - 연령별 콘텐츠 제작이 원칙. 여러 연령별 수업에 동일 콘텐츠 중복 공급 불가 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1차시 분량의 교육내용 증빙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용 키트 제작·배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면교육 1차시 분량으로 기획·구성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내용	인정방식	실시간 쌍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※ 보조강사(필수) 등 최대 2인 파견 ※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, 센터와 사전 협의(파견 여부 등) 후 진행 	- 1시간 당 1시수 인정 (대면교육과 동일)	온라인 콘텐츠 제작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를 제작(동영상, 키트 등)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포, 활용하는 교육활동 - 연령별 콘텐츠 제작이 원칙. 여러 연령별 수업에 동일 콘텐츠 중복 공급 불가 	- 1차시 분량의 교육내용 증빙	교육용 키트 제작·배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면교육 1차시 분량으로 기획·구성
	유형	내용	인정방식									
	실시간 쌍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※ 보조강사(필수) 등 최대 2인 파견 ※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, 센터와 사전 협의(파견 여부 등) 후 진행 	- 1시간 당 1시수 인정 (대면교육과 동일)									
	온라인 콘텐츠 제작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를 제작(동영상, 키트 등)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포, 활용하는 교육활동 - 연령별 콘텐츠 제작이 원칙. 여러 연령별 수업에 동일 콘텐츠 중복 공급 불가 	- 1차시 분량의 교육내용 증빙									
교육용 키트 제작·배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면교육 1차시 분량으로 기획·구성 											
<p>(증빙방식) 비대면 교육활동 확인서 양식 제출(* 추후 양식 배포 예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 콘텐츠 제작 시, 1차시 분량의 확정은 광역센터와 문화시설 간 협의에 따름 - 해당 저작물은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저작물이며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자, 주관기관(대전문화재단 등)의 '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(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) 관련 문화예술교육 홍보, 연구 등에 이용 가능 <p>* 심의 발표 후 추후 안내</p>												

- 지역의 상황이 대면·비대면교육 실행 어려울 경우, 대체활동 병행

유형	내용	증빙 방법	비고
①비대면 교육준비	실제 추진하는 비대면 수업 연계 준비 활동	준비활동 보고서(회의록), 준비활동 결과가 반영된 수업계획서	전체 회차의 30% 이내 한도에서 인정 가능
②조사·연구	교육 대상, 지역환경 등 사업 관련 심층 분석 연구·조사 등 (※ 지역 내 참여 대상군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)	연구 계획서, 회차별 회의록(출강확인서), 연구보고서(결과물)	연구결과물 필수 제출, 연구결과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관리 필요
③프로그램 (콘텐츠) 개발	참여 대상군 및 분야 관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활동	연구 계획서, 회차별 회의록(출강확인서), 결과물	
④모의수업	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전,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 진행	출강확인서	-
⑤기타	참여자의 가족 등 대상의 확장을 통한 기획활동(연수, 워크숍 등) 등	수업(활동) 계획서, 출강확인서, 교육참여자 명단, 활동보고서	지역센터 자체의 기획사업(연수 등)의 대상 내용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

- 인정 시수
· ①유형 제외, ②~⑤유형은 실제 소요 시수를 강사비 등으로 인정하되, **1일 최대 3시수 이내로 추진**

- 주의사항
· 단순 사업관계자간 네트워킹, 상호교류 활동 등은 제외, 제시된 유형 외의 활동 진행할 경우 **지역센터와 협의 후 진행 필수**
· 대체활동의 내용이 지역센터가 자체적으로 기획·운영하는 사업(연수 등)의 대상 및 내용 등이 **중복되지 않아야 함**
· 지역 내 **문화시설 고유 콘텐츠와의 연계성**을 고려하여 대체활동 추진

□ 기타사항

- 시설 기존 내부인력의 경우 인건비, 여비 등 책정 불가
-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수행을 위한 문화시설 내부 담당자 지정 필수
 - 주요업무 : 사업비 집행, 문화예술교육사 관리·운영 및 재단 관련 협의

□ 신청안내

- 신청기간: 2021.4.19.(월)~4.26.(월) **오후 6시 마감**
- 신청방법: 이메일 제출(sodwywd@dcaf.or.kr)
 - ※ 메일 제목: **[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] 시설이름_사업계획서**
- 제출서류
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 -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 - 해당사업 담당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
 - (3년 이내) 관련 실적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각 1부(해당시설)

III. 심의 및 선정

□ 심의 개요

- 심의 일정: 2021.4.29.(목) / 대전예술가의집 소통의방 2
- 심의대상: 공모 지원신청 시설(기관)
- 심의방법: 서류 및 인터뷰심사

□ 심의 및 선정기준

- 심의 기준

심의기준	평정내용	배점
사업 목적의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사업 이해도 ▪ 신청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	20
사업계획의 충실성·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력 운용계획의 충실성·타당성 ▪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구체성·충실성 - 사업내용, 구성, 일정, 장소, 참여인원 등 ▪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성 ▪ 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절성 	30
사업수행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 ▪ 코로나 대응 역량 ▪ 시설의 기존 활동실적을 통한 사업 추진 역량 등 	30
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 내용이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권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▪ 기타 문화예술교육 간 교류, 워크숍 등 활성화 방안 	20
계		100

※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우대

○ 선정기준

- 심사위원 3인의 총점 합계 점수(평균)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
- 총점 합계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시설 선정 제외함.
- 보조금 지원 금액은 사업규모 및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조정·결정
-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모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심사결과 적격 시설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※ 선정 문화시설이 사업포기(사업 수행 전) 또는 선정 제외(결격) 사유 발생 시 차 순위 시설 결정

IV. 추진일정

추진 내용	추진 일정											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공모 공고				■										
공모 신청서 접수				■										
선정 심의				■										
교부 신청서 접수.교부					■									
문화예술교육사 선발					■									
사업 진행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현장점검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정산 및 실적보고												■	■	■

V. 선정 시설 필수사항

관계자 간담회(3회) 참여

- 기간: 2021. 5월 ~ 12월 중
- 대상: 사업 참여 문화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사
- 내용: 사업 이해도 제고, 사업 참여인력 관리, 운영현황 공유 및 점검, 성과 공유 등

현장 점검 참여

- 기간: 2021. 6월 ~ 12월 중
- 대상: 참여 문화시설
- 내용: 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상·하반기 2회 이내 현장점검 진행
- 지표: 사업계획 및 내용 등에 따라 점검표 작성

문화예술교육사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참여

- 기간: 2021. 5월 ~ 10월(기간 내 2회)
- 대상: 사업 참여 문화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사
- 내용: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운영

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

- 기간: 2021. 5월 ~ 11월(기간 내 6회)
- 대상: 사업 참여 문화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등
- 내용: 지역 내·외 우수사례 교류,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희망 주제 사전 조사를 통한 각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참여자 네트워킹 등

□ 교육진흥원 주관 연수 및 워크숍 참여

- 기간 : 2021. 5월 ~ 12월 중
- 대상 : 사업 참여 문화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사
- 내용 :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사업을 위해 관계자별 교육 운영

VI. 문의

-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사업담당자 042)480-1052,3

[붙임] 예산 편성 지침 1부. 끝.

[붙임]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예산편성 지침

목	세	세세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4)	인건비 (문화 예술 교육 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급 : 2021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기준 이상으로 책정하고, 초과근무 수당, 정액급식비,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은 시설 내규(규정)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임금 편성 가능 ○ 4대보험 필수 가입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강사 교통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-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-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-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- 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30-100km</th> <th colspan="2">101-200km</th> <th colspan="2">201-300km</th> <th colspan="2">301-400km</th> </tr> <tr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-40</td> <td>7,000</td> <td>101-120</td> <td>12,000</td> <td>201-220</td> <td>24,000</td> <td>301-320</td> <td>44,000</td> </tr> <tr> <td>41-60</td> <td>8,000</td> <td>121-140</td> <td>14,000</td> <td>221-240</td> <td>28,000</td> <td>321-340</td> <td>48,000</td> </tr> <tr> <td>61-80</td> <td>9,000</td> <td>141-160</td> <td>16,000</td> <td>241-260</td> <td>32,000</td> <td>341-360</td> <td>52,000</td> </tr> <tr> <td>81-100</td> <td>10,000</td> <td>161-180</td> <td>18,000</td> <td>261-280</td> <td>36,000</td> <td>361-380</td> <td>56,000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181-200</td> <td>20,000</td> <td>281-300</td> <td>40,000</td> <td>381-400</td> <td>60,000</td> </tr> <tr> <th colspan="2">401-500km</th> <th colspan="2">501-600km</th> <th colspan="2">601-700km</th> <th colspan="2">701km 이상</th> </tr> <tr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/tr> <tr> <td>401-420</td> <td>64,000</td> <td>501-520</td> <td>84,000</td> <td>601-620</td> <td>104,000</td> <td>701-</td> <td>124,000</td> </tr> <tr> <td>421-440</td> <td>68,000</td> <td>521-540</td> <td>88,000</td> <td>621-640</td> <td>108,000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41-460</td> <td>72,000</td> <td>541-560</td> <td>92,000</td> <td>641-660</td> <td>112,000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61-480</td> <td>76,000</td> <td>561-580</td> <td>96,000</td> <td>661-680</td> <td>116,000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81-500</td> <td>80,000</td> <td>581-600</td> <td>100,000</td> <td>681-700</td> <td>120,000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30km이상이라도 같은 시·군·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※ 서울-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-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※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, 증빙자료 제출 없음 ☞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		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		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		
	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내 용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	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			
		행사 진행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
		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	
			2등급*	150,000/시간		
			3등급*	100,000/시간		
		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
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
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· 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 · 국외 : 실소요액		
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		
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			
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	
심사 및 자문료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
심사료 및 자문료		1등급	200,000원	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 : 150% · 5시간 이상 : 200% · 국외 : 실소요액		
		2등급				
		3등급	100,000원			
○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	
원고료	구 분	지급금액				
	원고료(외부인사)	○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				
※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						
번역료 및 감수료	구 분	지급금액				
번역료		○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
		○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			
		○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
		○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			
감수료		○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	
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
편곡	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시 1/2 만 지급		
		2등급	400,000원/곡			
		3등급	300,000원/곡			
작곡	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	
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·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		
※ 1등급 : 국·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					

목	세	세세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, 현장주차비 등 ○ 교육재료비(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재료비) -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(현금인출 불가) ○ 기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비비 편성 불가 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안내· 홍보물 제작비	○ 팜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인쇄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조달청 기준 참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○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 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준금액</th> <th>수수료</th> <th>기준 금액</th> <th>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천만원 미만</td> <td>282,000</td> <td>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</td> <td>632,000</td> </tr> <tr> <td>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</td> <td>282,000</td> <td>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</td> <td>674,000</td> </tr> <tr> <td>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</td> <td>336,000</td> <td>1억원 이상~2억원 미만</td> <td>848,000</td> </tr> <tr> <td>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</td> <td>365,000</td> <td>2억원 이상~3억원 미만</td> <td>894,000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</td> <td>505,000</td> <td>3억원 이상~4억원 미만</td> <td>940,000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</td> <td>547,000</td> <td>4억원 이상~5억원 미만</td> <td>985,000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</td> <td>590,000</td> <td>5억원 이상~6억원 미만</td> <td>1,147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준금액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	1천만원 미만	282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	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	282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	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336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
기준금액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미만	282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	282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336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 요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 발송, 쿼서비스, 보험료 등 ○ 우편통신요금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차비 (07)	차량/ 장소/ 기자재	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- 특히, 프로그램 운영 기관·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탁 사업비 (15)	외주 업체 용역비	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 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비 (220)	국내 여비 (01)	국내 여비	○ 출장경비 지급 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내 역</th> <th>지급방법</th> <th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시내출장</td> <td rowspan="2">여비</td> <td rowspan="2">정액</td> <td>· 4시간 미만 : 1만원</td> </tr> <tr> <td>· 4시간 이상 : 2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시외출장</td> <td rowspan="4">숙박비</td> <td rowspan="4">실비 (1박당)</td> <td>· 대중교통비 지급</td> </tr> <tr> <td>·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</td> </tr> <tr> <td>* [유류비 산출기준] 참조</td> </tr> <tr> <td>· 서울특별시: 70,000원</td> </tr> <tr> <td>· 광역시 60,000원</td> </tr> <tr> <td>· 그 밖의 지역 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'그 밖의 지역'에 해당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</td> <td rowspan="2">식비</td> <td rowspan="2">정액</td> <td>· 2만원</td> </tr> <tr> <td>* 2식 이하 제공 시 1/2 삭감 * 3식 제공 시 미지급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일비</td> <td>정액</td> <td>· 2만원 * 관용차, 렌터카 이용 시 1/2 삭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내 역	지급방법	지급액	시내출장	여비	정액	· 4시간 미만 : 1만원	· 4시간 이상 : 2만원	시외출장	숙박비	실비 (1박당)	· 대중교통비 지급	·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	* [유류비 산출기준] 참조	· 서울특별시: 70,000원	· 광역시 60,000원	· 그 밖의 지역 50,000원	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'그 밖의 지역'에 해당		식비	정액	· 2만원	* 2식 이하 제공 시 1/2 삭감 * 3식 제공 시 미지급		일비	정액	· 2만원 * 관용차, 렌터카 이용 시 1/2 삭감		
구 분	내 역	지급방법	지급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내출장	여비	정액	· 4시간 미만 : 1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· 4시간 이상 : 2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외출장	숙박비	실비 (1박당)	· 대중교통비 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·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* [유류비 산출기준]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· 서울특별시: 7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광역시 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· 그 밖의 지역 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'그 밖의 지역'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식비	정액	· 2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* 2식 이하 제공 시 1/2 삭감 * 3식 제공 시 미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비	정액	· 2만원 * 관용차, 렌터카 이용 시 1/2 삭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내 용
업무 추진비 (240)	사업추 진비(01)	회의 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과비 기준단가: 3,000원 / 1인 1식 기준 ○ 회의식비 기준단가: 10,000원 / 1인 1식 기준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